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604 발의연월일: 2022. 5. 13.

발 의 자: 박대수·지성호·양금희

임이자 · 김용판 · 이종성

김선교 • 안병길 • 조명희

김희곤 • 이주화 • 강기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 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,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. 기술진 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,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,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 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적기에 공 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침수피해,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.

이에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

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50조제2항 신설). 법률 제 호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및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각각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1항의 규정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 각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과징금) ① (생 략)	제50조(과징금) 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
	기관이 제20조의4제1항에 해당
	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
	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
	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
	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
	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
	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
	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<u>제1항 및 제2항</u> 에 따라 과징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
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	
별과 과징금의 금액, 징수절차	
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	
령으로 정한다.	
④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	<u>⑤</u>
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	
수·구청장은 <u>제1항 및 제2항</u>	<u>제1항부터 제3항</u>
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	<u>까지</u>
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	
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	
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	

제재 ·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	
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	
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	⑥ 제1항 및 제2항
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	
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	
니 된다.	